

Tax Allowance –
개정규정 ^{P1}

옵니버스 세법 개정안 ^{P3}

Tax Allowance – 개정 규정

정부는 2019년 11월 12일에 정부령 No.78 2019 (GR-78)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GR-78은 특정 비즈니스 섹터 및 지역에 투자하는 회사들에 대하여 부여하는 Tax Allowance와 관련한 개정규정입니다.

GR-78은 2019년 12월 13일자로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의 정부령을 폐기합니다(GR No.18 2015 (GR-18) 및 개정규정 GR No.9 2016 (GR-9))

GR-7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섹터 및 지역 (Business sectors and/or regions)

GR-78은 KBLI(Business Classification Field) 기준으로 183개의 적용 가능한 투자섹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166개는 투자섹터를 규정하고 있으며, 17개는 투자섹터와 지역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비즈니스 섹터에 대한 투자 지역에 대한 요구조건이 철회되었습니다.

세제 혜택 (Tax facility package)

기본적인 세제혜택은 기존규정인 GR-18의 주요사항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업데이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한 고정자산(토지포함) 금액의 30%의 소득공제 혜택(사업생산 시작후, 6년간 5%씩 공제)을 부여하며, 투자된 고정자산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고 특정기간 내에 매각/이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기존과 동일]. 개정된 GR-78에 따르면, 고정자산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 신규자산일 것, 타국가에서 완전히 재배치 되는 경우는 제외;

- ✓ Tax allowance facility를 취득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신규 비즈니스 라이선스 내에 등록이 되어야 할 것;
 - ✓ 납세자가 직접 소유하여야 하며(리스는 불가), 주요 사업활동에 사용 되어야 함.
2. 세무상 가속상각 적용[기존과 동일].
 3. 세무상 비거주자에 대한 배당의 원천징수세율이 10%로 적용되거나, 또는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해당 조세조약 적용[기존과 동일].
 4. 누적손실 세액공제를 5년을 초과하여 적용가능함(최대한도 10년). 개정된 GR-78은 누적손실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다음의 요구조건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적손실 세액공제의 적용가능 여부	과거규정	신규규정
1. GR-78에 규정된 투자	적용 가능 하지 않음	1년 추가 가능
2. 인더스트리얼 지역 또는 보세구역에서 수행하는 규정된 투자	1년 추가 가능	[기존과 동일]
3.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적용 가능 하지 않음	1년 추가 가능
4. 경제 또는 사회 인프라 개발분야에 최소 100억 루피아 이상의 투자	1년 추가 가능	[기존과 동일]
5.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된 원재료 또는 부품을 70%이상 사용하는 경우	4년째 연도부터 내국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년 추가 가능	2년째 연도부터 내국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년 추가 가능
6. 인도네시아 근로자의 고용	최소 연속된 5개년 이상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50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1년 추가 가능; 또는	최소 연속된 4개년 이상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30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1년 추가 가능; 또는
	최소 연속된 5개년 이상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1,00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2년 추가 가능.	최소 연속된 4개년 이상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60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2년 추가 가능.

7. 5년 기간 안에 투자금액의 최소 5%를 제품개발과 생산효율성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내에서 R&D를 수행하는 경우	2년 추가 가능	[기존과 동일]
8. 보세구역 외의 투자에 대하여 총매출의 최소 30%가 수출되는 경우	2년 추가 가능	[기존과 동일]

위의 1번과 2번의 옵션은 납세자가 Tax Allowance facility를 취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옵션은 납세자가 별도의 승인을 취득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의 개정

GR-78은 Tax allowance의 신청과 관련하여 OSS(Online Single Submission)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은 반드시 상업생산 이전에 이루어 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시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1. 납세자가 사업자 식별 번호 (NIB, Business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는 시점; 또는
2. OSS시스템에서 신규 사업라이센스를 발급받는 시점부터 1년 이내.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향후 재무부 규정으로 별도 제정될 예정입니다.

중복적용 제외규정

GR-78 규정에 따라 Tax allowance를 승인받은 납세자는 다음의 세제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1. 통합 경제 개발 구역(Integrated Economic Development Zones)에 대한 세제혜택
2. GR No.45 2019에 따른 Tax Holiday혜택
3. GR No.45 2019에 따른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세제혜택

경과규정

GR-78 규정은 납세자의 투자단계 및 시점에 따른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하여 하기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납세자가 기존 정부령에 따라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동 세제혜택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적용이 유효합니다.

2. GR-78규정의 효력발생(2019년 12월 13일) 이전에 기존의 GR-18 및 GR-9에 따라서 신청서를 투자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 규정에 따라 승인절차가 진행됩니다.
3. GR-18 및 GR-9의 효력기간(2015년 5월 6일 부터 2019년 12월 12일 까지) 중에 사업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납세자는 하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GR-78규정에 따라 세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a. 투자승인이 GR-18 및 GR-9에 따라 승인이 되거나 기각되지 아니하였을 것;
 - b. 비지니스의 세부사항이 GR-78에 규정된 비지니스 섹터 또는 지역 규정에 충족할 것;
 - c. 회사가 상업생산을 시작하지 아니하였을 것;
 - d. 신청서가 2020년 12월 12일까지 제출될 것.

과거 정부령에 대한 시행규정은 GR-78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유지됩니다.

옴니버스 세법 개정안 (Draft Omnibus Tax Law)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두 가지의 ‘옴니버스(Omnibus)’ 법안을 도입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세법과 관련된 것으로 투자촉진, 자발적 세법 준수촉진 및 국내외 사업에 대한 형평성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운영의 용이성을 높이고, 투자자 우호적인 투자혜택에 대한 사항입니다.

옴니버스 개념은 단일창구로서 여러가지 기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옴니버스 접근법은 관련 기본법을 완전히 개정할 필요없이 특정 법안 문제만을 개정하는데 자주 사용됩니다.

옴니버스 세법(“경제 통합을 위한 세법 및 조세혜택”)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및 지방세법과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 택스플래쉬는 2019년 11월 25일 재무부에서 발표한 사항을 기준으로 옴니버스 세법 개정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보다 포괄적인 세법 개혁은 수년째 협의 중인 정규 세법 개정 절차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발표된 옴니버스 세법 개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율 인하

- a. 현재 25%인 법인세율이 2021년-2022년은 22%, 2023년부터는 20%로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 b. 신규로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회사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상장 후 5년 간 추가 3%의 법인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1년-2022년은 19%, 2023년부터는 17%의 법인세율 적용가능.

2. 내국 납세자가 수령하는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감면

- a. 내국 거주자 납세자가 인도네시아 원천의 배당을 받는 경우에 특정기간(구체적인 사항은 협의중임) 동안 인도네시아에 재투자시 법인세 면제
- b. 내국 거주자 납세자(상장, 비상장 모두)가 외국 원천의 배당을 받거나 고정사업장의 세후 이익을 수령하는 경우에 특정기간(구체적인 사항은 협의중임) 동안 인도네시아에 재투자시 법인세 면제

3. 외국 납세자가 받는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 감면

현행 Article 26조에 따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20%)은, 이자가 인도네시아 원천일 경우에 감면될 예정입니다. 감면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4. 개인납세자의 과세소득에 대한 지역별 기준 계산

- a. 인도네시아 시민권자가 국외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인도네시아 비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 비거주자가 인도네시아 원천 소득이 있는 경우 Article 26조에 따라 20% 원천징수로 과세됩니다. 비거주자의 국외 원천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b.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 183일 이상을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원천소득만을 인도네시아에서 과세합니다.

5. 부가세 납부대상 기업(PKP)의 매입세액 공제 기준 완화

- a. 부가세 납세번호를 취득하기 전에 회사가 재화 또는 서비스에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매입세액은 회사의 과세사업(taxable delivery)의 80%까지 공제가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 b. 세무조사 중에 발견된 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6. 자발적 세법준수 의무 강화를 위한 행정벌과금에 대한 신규 기준

- a. 행정벌과금이 시중 은행 금리 수준이 이율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동 개정으로 현행 매월 2%의 벌과금보다 낮은 수준의 벌과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 b. 부적합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납세자 미등록에 따른 행정벌과금이 1%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7.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는 기회이자비용에 대한 신규 기준

불합리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세무당국이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비용에 대하여도 시중 은행 금리를 적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8. 이커머스에 대한 신규 과세 방법

- a. 옴니버스 세법은 외국인 이커머스 또는 디지털 사업 플랫폼에 대한 개념체계를 만들고, 인도네시아 시장내 거래에 대한 부가세 징수 및 신고의무를 체계화할 예정입니다.
- b. 정부는 인도네시아 내에 중요한 '경제적 실체'(물리적 실체 여부와 무관)가 있는 외국인 디지털 사업자를 포함하기 위하여 '고정사업장'에 대한 범위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이는 이커머스 사업에 대한 인도네시아 원천 소득에 대한 과세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9. 지방세의 단일화(Harmonisation of regional taxes)

지방정부는 지방세법과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정한 과세대상과 세율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옴니버스 법은 관련 지방정부와 협의 후에 대통령령을 통하여 이러한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중앙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율에 대한 광범위한 통합은 사업의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세수 징수에 대한 권리는 지방정부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10. 조세혜택에 대한 원스탑 규정

인도네시아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조세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i) 텍스할리데이;
- ii) 인도네시아 내 R&D 등 지출에 대한 혜택;
- iii)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조세혜택;
- iv) 특별경제구역에 대한 혜택;
- v) 국제시장에서 거래된 국채에 대한 혜택;
- vi) 지방세 경감 및 면제 혜택.

이러한 조세혜택과 관련하여 일관성을 제고하고 보다 안정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상기 조세혜택은 법안 내에 특정범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진행상황

현재 버전의 옴니버스 세법 개정안은 최근 정부관료 회의에서 재무부가 발표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데이트된 개정안이며, 정부는 최종개정안을 2019년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동 옴니버스 세법 개정안은 납세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PwC는 법안제정 절차를 모니터링하고 국회에서 협의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데이트 사항이 있으면 적시에 공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한국데스크(KBD)로 연락부탁드립니다:

정태훈 회계사

E: taehun.jung@pwc.com

박인혁 회계사

E: inhyuk.park@pwc.com

박재성 회계사

E: jay.y.park@pwc.com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id.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id.pwc.com

Raemon Utama
raemon.utama@id.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id.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id.pwc.com

Runi Tusita
runi.tusita@id.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id.pwc.com

Hendra Lie
hendra.lie@id.pwc.com

Ryosuke R Seto
ryosuke.r.seto@id.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id.pwc.com

Hisni Jesica
hisni.jesica@id.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id.pwc.com

Ali Widodo
ali.widodo@id.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id.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id.pwc.com

Amit Sharma
amit.xz.sharma@id.pwc.com

Kianwei Chong
kianwei.chong@id.pwc.com

Sujadi Lee
sujadi.lee@id.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id.pwc.com

Laksmi Djuwita
laksmi.djuwita@id.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id.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id.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id.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id.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id.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id.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id.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id.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id.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id.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id.pwc.com

Mohamad Hendriana
mohamad.hendriana@id.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id.pwc.com

Deny Unardi
deny.unardi@id.pwc.com

Oki Octabiyanto
oki.octabiyanto@id.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id.pwc.com

Dexter Pagayonan
dexter.pagayonan@id.pwc.com

Omar Abdulkadir
omar.abdulkadir@id.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id.pwc.com

Engeline Siagian
engeline.siagian@id.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id.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id.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id.pwc.com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id.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id.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id.pwc.com

www.pwc.com/id

 Pw C Indonesia

 @Pw C_Indonesia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contact.us@id.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9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n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